

- 2025년도 제2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-

추 가 합 격 자 공 고

2025. 4. 19.(토) 시행한 2025년도 제2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추가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10일

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최종합격자 : 3명 [붙임1]

2 임용후보자 등록

가. 기 간 : 2025. 7. 17.(목)

나. 장 소 :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부서 [연락처 별첨]

다. 등록방법

- 최종합격자는 위 기간 중 제출서류를 갖추어 임용예정기관 인사부서에 **직접 방문하여 임용후보자 등록**을 하여야 합니다.
-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일(2025. 7. 10.)로부터 15일 이내(2025. 7. 25.)의 기간 중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라. 등록(제출) 서류

- 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(임용예정기관에 비치 / **[붙임2]** 참조)
- ② 기본증명서(상세) 1부(**2025. 7. 10. 이후** 발급분)
 - ※ 일반/상세/특정증명서 중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 제출
- 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**2025. 7. 10. 이후** 발급분)
- ④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- ※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 제출
- 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(**[붙임3]** 참조)

※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공무원용으로 발급하며, 검사 시 사진 2매 필요(발급기간 2일 정도 소요)

※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신체 검사서는 재발급하여 제출 가능

- ⑥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
- ⑦ 경력증명서 1부(공무원 경력합산에 유효한 경력 / 해당자에 한함)
- ⑧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(원본 지참 / 해당자에 한함)
- ⑨ 사진 5매
 - 사진 규격(3.0cm × 4.0cm) 4매
 - 사진 규격(5.0cm × 7.0cm) 1매

3

유의사항

- 합격자가 지정된 **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임용포기로 간주**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4

기타사항

- 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(서류작성 등)과 임용시기 등 향후 일정에 관하여는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* 임용예정기관 [도, 시·군] 인사담당부서 연락처 ***

기관명	전화번호	기관명	전화번호
경북도	054-880-2848	봉화군	054-679-6583

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복지과 인재채용팀(☎ 054-880-4584)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 (<https://www.gb.go.kr>) 시험정보-질의/응답(Q&A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[붙임1]

2025년도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추가합격자

■ 보건연구(공중보건)

경북도

51600065 - 이상 1명 -

■ 환경연구(환경)

경북도

51700038 - 이상 1명 -

■ 9급 의료기술(의료기술-임상병리)

봉화군

44600053 - 이상 1명 -

[붙임2]

[별지 제4호서식]

임용후보자등록원서(원본)

※ 등록번호		제 회 번		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		()년도 제 회	
※ 급		직		응시지구(기호) 응 시 번 호		지구	번
				직 급 별		급 직	
① 성 명	(한글)			② 희망지역		※ 등록심사	
	(한문)			제1지역	시군	사진대조	서류심사
	(영문)			제2지역	시군	①	①
④ 주 소						(사진부착)	
⑤ 연 락 처	전화번호 :						
	휴 대 폰 :						
⑥ 병 역	○ 병역필 / ○ 면제 / ○ 미필 / ○ 여성						
⑦ 학 력							
부터	까지	학 력		전공 · 부문 · 과목			
⑧ 자 격 면 허				⑨ 상 별			
연 월 일	종 별			연 월 일	사 항		
⑩ 경 력							
부터	까지	경 력 사 항			발령청		

(※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)

⑪ 비상연락처

관계	성명	연락처	

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,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,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.

년 월 일

출원자

(인)

(임용권자) 귀하

[붙임3]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[별지 제1호서식]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
⑥ 검사 시	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사 진
(3.5cm × 4.5cm)

※ 압인 또는 계인

검 사 내 용

키	cm		체 중	kg	
허리둘레	cm	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) 우: ()
종 양 질 환			이 비 인 후 질 환		
호 흡 기 질 환			심 혈 관 질 환	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	신장/비뇨기계질환		
내 분 비 질 환			혈 액 질 환		
신 경 질 환			피 부 질 환		
근 골격계 질환			안 질 환		
정 신 질 환			흉 부 X선 검 사		
기 타		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]합 격 [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“검사 내용”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임신부나 홍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홍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홍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- (작성 예시) 임신부인 경우 “임신으로 인해 홍부X선 검사 면제”라고 적습니다.
3. “검사 결과 합격 여부”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“√”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(예시: ‘만성골수성백혈병’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